

## 국외 인턴십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04., 개정 2020.08.25. 개정 2021.02.22. 개정 2022.04.04. 개정 2023.06.26.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칙 제24조의1 제4항에 의거하여 재학생의 국외 산업체 연수를 통하여 현장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계를 통하여 취업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.

### 제2조 (정의)

국외 인턴십(이하 “인턴십”이라 한다) 이라 함은 학생들이 재학 중 국외산업체에서 연수를 수행함을 의미한다.<개정 2021.02.22.>

### 제3조 (성적처리 및 학점인정)

- ① 인턴십 성적은 “국외인턴십”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한 학기에 18학점을 인정하며, 성적처리는 Pass/Fail로 한다.
- ② 개강 후 3주전에 인턴십 포기 시 학교로 복귀하여 정상수업을 수강하여야 한다.
- ③ 개강 후 3주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성적을 Fail로 표기하며, 재학 중 인턴십 과정을 재수행 할 수 없다.
- ④ 인턴십 과정을 수행 중인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턴십기관의 부도, 휴·폐업, 도산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턴십 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에서 잔여기간을 이수 할 수 있다.
- ⑤ 인턴십 과정을 수행 중인 자가 사고와 질병 또는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시, 인턴십 과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기타 대학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지원자격)

- ① 인턴십의 지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1. 졸업에 이상이 없는 자(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)
  2. 등록금을 납부한 자(예정자포함)
  3. 졸업년도 1학기 또는 2학기 개강 2주전에 인턴십신청서를 제출한 자(3년제 학과는 인턴십을 1회 연장할 수 있다).<개정 2023.06.26.>
  4. 해당국가의 언어능력이 [별표 1]수준을 만족하는 자
- ② 학과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과장이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.

### 제5조 (자격미달 및 제외대상자)

- ① 제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에서 2년제 과정은 2학기미만, 3년제 과정은 4학기미만 이수한 자.
2. 총 취득한 평점평균이 3.0미만인자.
3.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자 .
4. 졸업에 필요한 과목(교필,교양)을 미이수한 자.
5. <삭제 2021.02.22.>
6. 건강상 이상이 있는 자.
7. 기타 선발기준에 부적합한 자.

#### 제6조 (기간)

인턴십 기간은 학기중 연속하여 15주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7조 (산업체 제한기준)

- ① 산업체의 제한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단순노무직종은 제외한다.
  2. 학생신분에 반하는 직무나 직종은 제외한다

#### 제8조 (국외 인턴십 운영위원회)

- ①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당해연도 인턴십을 운영하는 학과의 계열(전공)장 및 학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<개정2019.04.04., 2020.08.25., 2021.02.22., 2022.04.04.>
-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단, 학과장(전공장) 위원은 당해연도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국외 인턴십 관련 기획, 승인, 운영 및 심의 등 제반사항을 수행한다.
-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#### 제9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#### 제10조 (인턴십 승인)

- ① 인턴십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국외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.
  1. 국외 인턴십 신청서
  2. 국외 인턴십 수행계획서
  3. 산업체(중개업체) 인턴십 확인서
  4. 참가자 서약서

## 제11조 (인턴십 지도)

- ① 학과장(전공장)은 인턴십 기간 중 학생지도를 해야 한다.
- ② 인턴십 지도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지도교수는 인턴십 기간 중 2회 이상 인턴십 지도 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9.04.04.><개정2020.08.25.><개정2021.02.22.>

## 제12조 (제출서류)

- ① 인턴십 종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인턴십 업체 종합평가서
  2. 인턴십 학점인정 평가조서
  3. 인턴십 지도 결과 최종보고서
  4. 인턴십 수행결과보고서
  5. 국외 인턴십 일지

## 제13조 (업무분장)&lt;개정2019.04.04.&gt;

- ① 현장실습지원팀은 인턴십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.<개정2020.08.25.>  
<개정2021.02.22.>
  1.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임사항 업무
  2. 인턴십과 관련하여 경비지원
  3.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인턴십 학생 명단을 교무팀에 통보
  4. 기타 인턴십 이수에 관련된 제반사항
- ② 교무팀은 인턴십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.<개정2021.02.22., 2022.04.04.>
  1. 인턴십 과정 개설
  2. 인턴십 학생 수강 처리
  3. 인턴십 학생 학점 부여
  4. 인턴십 이수 증명서
  5. 기타 인턴십 학점에 관련된 제반사항
- ③ 인턴십 수행학과는 인턴십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.
  1. 인턴십 과정 개설 요청서 제출
  2. 제10조 인턴십 승인 제출서류 작성 및 취합 후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<개정2020.08.25.>  
<개정2021.02.22.>
  3. 제12조 제출서류 작성 및 취합 후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<개정2020.08.25.><개정 2021.02.22.>
  4. 계열(학과)장은 인턴십 운영위원회 결과물에 따라 성적입력을 하고 입력된 명단을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한다.<개정2020.08.25.><개정2021.02.22.>
  5. 인턴십 일지보관(졸업 후 3년)

제14조 (위반자 조치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,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1. 인턴십 과정 중 인턴십 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 자
  2. 고의적으로 인턴십 과정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  3. 고의적으로 인턴십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(정보유출 등)를 한 자
  4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5조 (학생의 의무)

- ① 국외인턴십 참여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1. 인턴십 종료 후 제출서류는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내 미제출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성적사정일 또는 졸업사정일 1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.
  2. 연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한다.
  3. 해외인턴십 기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과장(전공장)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

제16조(위반자 조치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,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1. 인턴십 과정 중 무단결근 자
  2. 고의적으로 인턴십 과정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  3. 고의적으로 인턴십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(정보유출 등)를 한 자
  4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7조(기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을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외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15. 3. 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4. 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8. 2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2. 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04. 0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6.2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

## □ 언어별 어학 자격 및 적용

언어	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	비고
영 어	NEAT 1급 160점, TOEIC 550점, G-TELP 2등급 42점, OPIc NH 등급, 토익 Speaking 레벨5(110점), TEPS 450점, ESPT 3급, PELT 3급, TOEFL(PBT 450점, CBT 137점, IBT 55점), TOSEL(A)397점, TESL 104점, IELTS 4.5 이상	-어학성적은 접수 마감일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 인정
중국어	新HSK3급, CPT 300점, BCT 2급 이상	
일본어	JPT 415, JLPT 신N4, 니켄 450점 이상	